

제 2011-BO-0108-5 호



안 전 인 증 서

(주)와이즈

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덕영대로 2022 (상갈동)

위 사업장에서 제조하는 아래의 품목이 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(안전인증) 및 시행규칙 제110조(안전인증 심사의 종류 및 방법) 제4항(인증서 교부)에 따른 안전인증심사 결과 안전·보건 기준에 적합하므로 안전인증표시의 사용을 인증합니다.

품 목

Temperature Sensor (Thermocouple, RTD)

형식·모델/용량·등급/인증번호

형식·모델

인 증 번 호

R95X(ETR10*)

11-AV2BO-0108

용량·등급

Ex ia IIC T6

$U_i = 30 \text{ V}$, $I_i = 100 \text{ mA}$, $P_i = 750 \text{ mW}$, $C_i = 0.1 \text{ nF}$, $L_i = 0.01 \text{ mH}$

정 격

$T_{amb}: -40^\circ\text{C} \sim +65^\circ\text{C}$

동일형식 뒤쪽 참조

인 증 기 준

방호장치 의무안전인증 고시(고용노동부고시 제2016-54호)

인 증 조 건

(뒤쪽)참조

- 2011.05.06. 최초발급
- 2013.05.21. 동일형식
- 2017.04.10. 동일형식
- 2022.06.09. 제조자명 변경 ((주)와이즈산전 → (주)와이즈)
- 2023.07.24. 인증변경 (Element 사양 추가, Sheath outer diameter 추가, Extended lead wire tube (Tip) type 추가, Ceramic (Alumina) Terminal Board type 추가)
- 2026.10.06. 동일형식 (Element 사양 추가)

2026년 10월 06일

한국 산업 안전 보건공단 이사장

